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편집재량권과 「수정헌법 제1조」

노명훈 미국 살베 레지나 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최근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에 관련된 뉴스는 물론 관련 법안이나 사건사고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콘텐츠들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논란이 커진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가령, 미국 상·하원 의원과 같은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누구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다. 이런 배경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정치콘텐츠와 허용되지 않는 정치콘텐츠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권리도 동시에 보호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플랫폼기업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조정하거나 심지어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州)의회는 모욕적이거나, 허위 또는 유해한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권리를 근절하기 위해 「S.B. 7072」(플로리다) 법안과 「H.B.

20」(텍사스)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과 관련한 미국의 제5 연방항소법원과 제11 연방항소법원은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부여된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를 알아보고, 정부의 방침과 “일반통신사업자이론(Common carrier theory)”의 개념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주정부의 규제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II. 배경

1. 「수정헌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¹⁾ 특히나 「수정헌법 제1조」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는 민간기업이 자신의 미디어플랫폼 내에서 표현을 규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시민들이 개인사업에 참여할 때에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4조」²⁾를 통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³⁾ 국민 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한 보호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으로 확장되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 제한 또는 검열을 원하는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2. 국가행위원칙

국가행위원칙(The State Action Doctrine)은 「수정헌법 제14조」와, 1883년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1875)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유래되었다.⁵⁾ 여기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국가 차별에 대한 보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인의 차별적 행

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U.S. Const. amend. I.

2) U.S. Const. amend. XIV, § 1.

3) Smith, E. & Zelman, J. (2021). The First Amendment: Where it is Implicated and Where it is Not. (FordHarrison). URL: <https://www.jdsupra.com/legalnews/the-first-amendment-where-it-is-implicated-and-where-it-is-not-3482126/> [<https://perma.cc/XQK6-3PHK>].

4) Keegin, Stafford W. (1967).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State Action Doctrine. (Washington & Lee Law Review). Vol.24, pp.133-135.

5) See The Civil Rights Cases, 109 U.S. 3, 11 (1883).

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⁶⁾ 하지만 분명히 국가행위가 개개인에게 행하여지는 차별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위, 주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개인의 주장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900년대 중반 대법원은 국가 또는 민간이 언제 문제해결에 개입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⁷⁾ 특별히 법원은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행위자가 국가행위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예외로 두었다.⁸⁾ 이러한 경우는 “공공행위”로 간주되고 예외로 허용되었다.⁹⁾ 정부가 수행한 특정 활동을 개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개인의 행위가 정부가 수행한 것, 즉 국가의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목록화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주요기능과 관련된 행위, 예를 들어, 선거, 도시 운영 및 도시공원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¹⁰⁾ 그러나 종종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간혹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행위자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 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플랫폼은 국가행위자가 아니며, 콘텐츠를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왔다.¹¹⁾

3. 뉴스매체로서의 소셜미디어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사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민간 미디어 플랫폼이 국가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8년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인 10명중 7명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연결되어 뉴스콘텐츠를 다루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답했다.¹²⁾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사교활동과 쇼핑, 뉴스 시청과 정치 관련 토론까지 미국 생활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이용자 중 한 명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일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트위터를 활용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

6) Id. at 17–18. The Court held: Civil rights, such a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gainst state aggression, cannot be impaired by the wrongful acts of individuals, unsupported by State authority in the shape of laws, customs, or judicial or executive proceedings. The wrongful act of an individual, unsupported by any such authority, is simply a private wrong, or a crime of that individual.

7) Hala Ayoub, The State Action Doctrin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11 Fla. St. U. L. Rev. 893, 894–95 (1984)

8) Shelley v. Kraemer, 334 U.S. 1 (1948).

9) Hala Ayoub, The State Action Doctrin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11 Fla. St. U. L. Rev. 893, 894–95 (1984)

10) See, e.g., Smith v. Allwright, 321 U.S. 649, 664–65 (1944), See, e.g., Marsh v. Alabama, 326 U.S. 501, 509 (1946), See, e.g., Evans v. Newton, 382 U.S. 296 (1966)

11) See Island Online, Inc. v. Network Sols. Inc., 119 F. Supp. 2d 289, 307 (E.D.N.Y. 2000); Estavillo v. Sony Comput. Ent. Am., No. C-09-03007 RMW, 2009 WL 3072887, at *1–2 (N.D. Cal. Sept. 22, 2009); Young v. Facebook, Inc., No. 5:10-cv-03579-JF/PVT, 2010 WL 4269304, at *2–3 (N.D. Cal. Oct. 25, 2010).

12) Hooker, Matthew. P. (2019). Censorship, Free Speech & Facebook: Applying the First Amendment to Social Media Platforms via the Public Function Exception. (Washington Journal of Law , Technology & Arts), Vol.15, pp.36–39.

국립문서보관소는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그의 트윗을 보관하고 있다.¹³⁾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뉴스매체 형태로 이용되는 추세이며,¹⁴⁾ 주요 뉴스매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점차 사회적 미디어로 진화하면서, 단순한 사회적 소통의 목적을 넘어, 이제 미국인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최신 뉴스 헤드라인을 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민간행위자로 여겨지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플랫폼은 증오표현, 가짜뉴스, 괴롭힘 및 보복, 음란물과 같은 불쾌한 콘텐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콘텐츠를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지침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자신의 커뮤니티가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개방된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증오심 표현, 나체노출,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한다.¹⁵⁾ X(옛 트위터)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일부 형태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민감한” 계정으로 표시해야 한다.¹⁶⁾

이와 관련,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의 디플랫폼화(deplatforming, 공개표현금지)로 주목을 받던 당시¹⁷⁾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¹⁸⁾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했을 때 정부정책에 따른 국가행위자와 같은 형태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법원은 표면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위터의 결정을 국가행위적 조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법원은 특정 정치인이 “선호하는 것”을 트위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가행위원칙이 트위터의 이런 행위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국가행위원칙의 불확실성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규제/검열/삭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간섭행위를 넘어서는 대체이론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이 바로 “일반통신사업자이론”(Common carrier theory)이다.

13) See Lincoln Caplan, Should Facebook and Twitter be Regulated Under the First Amendment? Wired (Oct. 11, 2017, 7:88 AM), URL: <https://www.wired.com/story/should-facebook-and-twitterbe-regulated-under-the-rst-amendment/>; Presidential Records Act, 44 U.S.C. §§ 2201-2209.

14) Walker, M. & Matsu, Katerina E. (2021). News Consumption Across Social Media in 2021 3-4. (Pew Research, Centerr). URL: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2021/09/20/news-consumption-across-social-media-in-2021/>.

15) Frenkel, S., Isaac, M. & Conger, K. (2018, 10.29). On Instagram, 11,696 Examples of How Hate Thrives on Social Media.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18/10/29/technology/hate-on-social-media.html>.

16) Frenkel, S. (2018, 10, 11). Facebook Tackles Rising Threat: Americans Aping Russian Schemes to Deceive.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18/10/11/technology/fake-news-online-disinformation.html>.

17) Delkic, M. (2022, 5, 10). Trump's Banishment from Facebook and Twitter: A Timeline.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22/05/10/technology/trump-social-media-ban-timeline.html>.

18) Trump v. Twitter Inc., 602 F. Supp. 3d 1213, 1217 (N.D. Cal. 2022).

4.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일반통신사업자

미국 최대 철도기업인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 Railroad)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Washington) D.C.로 향하는 극우단체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헌법적인 행동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비록 <유니온 퍼시픽>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회사는 일반통신(운송)사업자이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그가 폭력적인 집회가 참가할 수 있는 잠재적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동 서비스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¹⁹⁾ 유사한 예로, 전화회사와 우편서비스도 헌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미국 우체국서비스는 가령, 극단주의적 성향의 잡지 배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통신기업 <AT&T>와 같은 회사는 급진적인 정치조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일반운송업체는 철도, 선박, 항공사 등 모든 사람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인 경우가 많았다. 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운송)통신사업자의 경우, 개념이 확대되어 전화네트워크 같은 통신회사 및 통신업체는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²⁰⁾ 하지만 개인이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는지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정부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²¹⁾ 이러한 ‘일반통신사업자’ 개념은 인기없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소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체국이나 철도 서비스가 특정한 정치 성향의 지지를 거부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듯, 통신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에 주목한 것이 일반통신사업자이론의 배경이다.

5.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일반통신사업자’인가?

하지만 여전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일반통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여전히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²²⁾ 일반통신사업자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플랫폼 회사가 이용자가 어떠한 콘텐츠에

19) A “common carrier” refers to “[a] commercial enterprise that holds itself out to the public as offering to transport freight or passengers for a fee” and “is generally required by law to transport freight or passengers without refusal if the approved fare or charge is paid.” Common Carrier, Black’s Law Dictionary (11th ed. 2019).

20) Frankel, A., (2022.5. 31). Are Internet Companies ‘Common Carriers’ of Content? Courts Diverge on Key Question. (Reuters). URL: <https://www.reuters.com/legal/trans-actioanal/are-internet-companies-common-carriers-content-courts-diverge-key-question-2022-05-31/>.

21) Volokh, E. (2021). Treating Social Media Platforms Like Common Carriers? (Journal of Free Speech Law), Vol.1, pp.377-380.

22) Villasenor, J. (2022. 10. 27). Social Media Companies and Common Carrier Status: A Primer. (Brookings). URL: <https://www.brookings.edu/blog/techtank/2022/10/27/social-media-companiesand-common-carrier-status-a-primer/> [https://perma.cc/



접속할 수 있는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한하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해로운" 발언에 대한 금지를 든다. 이에 반해, 일반 통신업체 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이용자와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선전화, 전화시스템, 네트워크와 같은 단지 의사소통의 연장일 뿐이며 모두 일반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소셜미디어기업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말을 억제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전화회사와 비슷하며 특정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견해다.

6. 플로리다주(州) 「S.B. 7072」 법안

2021년 5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 (Ron DeSantis)는 ‘금진좌파’ 의제를 선호하면서 “보수적인” 플로리다 주민의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숨은 의도를 없애기 위해 「S.B. 7072」 법안에 서명하였다.²³⁾ 주지사는 이 법안이, 플로리다 주민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일반통신사와 유사하게

²³⁾ NetChoice, LLC v. Att’y Gen., Fla., 34 F.4th 1196, 1203 (11th Cir. 2022).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 플랫폼의 일관되지 않고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²⁴⁾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등록된 모든 정치후보자의 콘텐츠가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더라도 콘텐츠를 게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S.B. 7072」는 ① 콘텐츠 조정 제한 ② 공개의무 ③ 이용자데이터 요구사항 등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²⁵⁾ 콘텐츠 조정 제한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의도적으로 공직후보자의 플랫폼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그의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또한 법안은 ‘검열’(censoring), ‘그림자 차단’(shadow banning), ‘공개표현금지’(deplatforming) 등과 같은 특정 형태의 콘텐츠 통제를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10만 단어 이상을 게시하거나 가입자 또는 월이용자 10만명, 100시간 게재, 연간 이용자수 최소 1억 명 이상인 플로리다에 위치한 언론미디어기업에 해당된다. 공개의무 조항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철저한 정보공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검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변경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규칙, 조건 및 관련 계약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라 플랫폼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의 모든 정보, 콘텐츠, 자료 및 차단된 이용자가 통

24) S.B. 7072, 123d Reg. Sess. § 1(6) (Fla. 2021).

25) Lewis, S. C. (2022, 8. 15). Circuit Splits Over States' Rights to Regulate Social Media Platforms. (New York Law Journal). URL: <https://www.law.com/newyorklawjournal/2022/08/15/>

지를 받은 후 최소 60일 동안의 데이터를 공개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⁶⁾

법안이 통과되자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로리다 주법안의 내용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향유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플로리다 주정부는 제11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기에 이른다.

7. 텍사스주(州) 「H.B. 20」 법안

그렉 에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2021년 9월 9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이용자를 검열한다”와 같은 슬로건 속에서 행하는 검열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20개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였다.²⁷⁾ 여러 측면에서 텍사스주의 「H.B. 20」 법안은 사실상 플로리다주의 「S.B. 7072」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①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관점 ② 이용자의 표현에 나타난 관점 또는 ③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표현 및 다른 사람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능력을 검열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²⁸⁾ 다만, 「S.B. 7072」와 달리,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예외조항을 규정했는데, 특정 성적 콘텐츠 및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폭력 및 위협적인 콘텐츠에 대해서이다. 또한 텍사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나, 허용 가능한 이용정책 및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와 같은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12월 1일 「H.B. 20」 법안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S.B. 7072」 법안 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원고인 무역협회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성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민간기업이지, 일반 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있다면서, 텍사스 주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편집재량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텍사스 주법안이 플랫폼의 ‘콘텐츠 유포 방식’에 대한 검열 및 통제 방식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26) S.B. 7072, 123d Reg. Sess. § 4(1)(c) (Fla. 2021).

27) H.B. 20, 87th Leg., 2d Spec. Sess. (Tex. 2021)

28) See NetChoice, LLC v. Paxton, 573 F. Supp. 3d 1092 (W.D. Tex. 2021).



Ⅲ. 연방대법원은 심리 중

2024년 3월 18일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두 사건 *Moody v. NetChoice* 및 *NetChoice v. Paxton*은 미국의 핵심기술 로비그룹인 NetChoice와 컴퓨터통신정보협회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formation Association)의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이렇게 두 주법안이 발효 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증오표현, 테러행위 및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보수적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과, 예상과 달리 진보성향을 보이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은 주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검열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만, 플랫폼의 편집재량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 메시지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법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려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노력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의 가장 보수적인 법관인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조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묵살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엘

레나 캐건(Elena Kagan), 브레트 캐바노우(Brett Kavanaugh) 등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지닌 대법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이 전통적인 검열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민간행위자가 아닌 정부의 검열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애런 닐슨(Aaron Niels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콘텐츠 구성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책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수정헌법 제1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 및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법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Paul Clement)는 만약 법이 발효되면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엄중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정부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모든 관점을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관심을 끌었던 논쟁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게시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이나 메시지를 차별할 수 없는 일반통신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향후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법안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2024년 대통령선거는 물론 공중보건, 국가안보, 그리고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 5개월 전인 2024년 6월 말경,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